
‘17~ ‘18년 원전연료 국외복합운송 용역
用役適格審査 細部基準
(원전연료)

2017. 1

조달처

용역적격심사기준

제 1 조 (목적)

이 기준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용역계약 업무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술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일반용역"이라 함은 기술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3호 내지 10호 및 그에 준하는 용역)을 총칭한다.

3. "청소용역"이라 함은 건축물·시설물과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개별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4. "경상보수용역"이라 함은 시설물 혹은 사택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5. "경비용역"이라 함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지역내의 시설 및 물자 등 재산, 장소에서의 도난, 파괴, 재해, 무단침입, 기타 혼잡 등 위해발생을 사전 예방 또는 방지하고 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6. "하수처리용역"이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용역을 말한다.

7.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이 광범하고 심층있게 적용되어야 할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회사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8. "정보통신용역"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동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용역을 말하며 관련 정보통신장비 및 S/W의 유지보수용역(이하 "유지보수용역"이라 한다)과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구분하며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개발, 시스템 운용환경 설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입력 및 정보전략계획 수립을 말하며, 관련 정보통신장비 및 S/W의 설치업무를 포함

할 수 있다.

9. "폐기물처리용역"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소각·파쇄·고형화·매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용역을 말한다.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경우에는 환경부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격업체를 선정한다.

10. "육상운송용역"이라 함은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용역으로서 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한다.

11. "동등이상용역"이라 함은 당해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 또는 당해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포함하는 용역으로서 용역의 난이도나 범위가 그 이상인 용역을 말하고 "유사용역"이란 당해용역과 유사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말하며 각각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12. "운송주선용역"이라 함은 자기명의로 물품의 운송을 주선하는 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운송을 원하는 자가 저렴·확실·신속하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운송인을 선정 및 운송계약을 맺고 운송을 하게 되며, 이에 수반한 운송물품의 수령·통관절차·운송·인도·보관 등에 수반되는 각종 업무를 주선하여 책임지고 처리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 3 조 (적격심사기준 등의 열람)

-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용역에 관련된 적격심사기준의 세부심사기준 등을 열람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②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기준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 및 한수원의 전자상거래시스템(<http://ebiz.khnp.co.kr>)에 게시한다.

제 4 조 (심사분야별 배점 및 세부심사기준)

- ① 적격심사의 용역종류별 심사분야별 세부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 ② 적격심사는 별표의 항목별 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심사항목별 가산점 등으로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사분야별 및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적용하며,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규정(입찰공고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다만, 재무위험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 ④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한다)를 2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 ⑤ 신인도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당해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

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⑥ 기관별 윤리행동강령(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한수원의 2직급 이상 퇴직인력을 고용한 경우와 한수원의 퇴직임원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고용한 경우 1명당 0.5점 감점(-1.0점 한도). 이 경우 각 직급별 채용 제한에 관한 규정이 각각 신설되어 시행된 날 이후에 퇴직한 직원부터 적용한다. 단,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한수원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감점 기준일 : 임원 및 1(갑)직급 2012.8.31, 1(을)직급 2013.4.4, 2직급 2013.6.11.]

⑦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에 따른다. 다만, 발전소주변지역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단순 노무제공 용역 및 고시금액 미만 기술용역은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으로 적용하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기술용역의 경우는 관련 고시기준에 따른다.

제 5 조 (사전 사업수행능력 심사)

①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 당해용역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사전평가를 실시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세부기준의 당해용역 수행능력 심사를 생략하고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배점한도를 만점으로 사전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사전평가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의 경우에는 용역 시행부서에서 제1항의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별도로 당해용역 수행능력 심사기준을 정한다.

제 6 조 (적격심사 대상 결격 및 재심사)

①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구성원 중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제외자의 비율은 잔존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법정관리개시 또는 화의개시결정과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하여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한다. 부도 이외의 사유로 법정관리 및 화의신청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③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 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이행위험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심사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이행위험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한다.

④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 시 반드시 선사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 시 반드시 해외파트너사와의 업무협약서 혹은 합의서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 7 조 (적격심사대상자 선정 및 심사)

① 계약담당자는 가격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이상인 최저가 입찰자에게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가격평점을 제외한 비가격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탈락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한수원의 전자상거래시스템(<http://ebiz.khnp.co.kr>)을 통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 및 적격심사 자기평가점수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중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심사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적격심사는 적격심사 대상자의 서류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의뢰, 계약심의위원회 자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 8 조 (공동수급체 평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적격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의 평가는 별지 ㉓에 따른다.

제 9 조 (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기술용역의 경우에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용역은 85점,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일반용역의 경우에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단, 정보통신용역, 육상운송용역의 중소기업간 경쟁대상은 88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제1항의 낙찰기준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차순위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가 필요할 경우 제10조의 재심사 요청기간 경과후 통보한다. 다만, 적격심사기간의 장기 소요로 계약 추진일정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차순위이후 입찰자에 대하여도 일괄적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계약을 체결.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 해당업체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⑦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결과를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한다.

제 10 조 (재심사)

① 제9조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1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의한 재심사 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한다.

제 11 조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한수원 계약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한다.

제 12 조 (기타 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칙 및 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하며,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이 적격심사기준 내용 중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심사항목별로 평가한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각 분야별 점수를 모두 합산한 마지막 단계의 종합평점에서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이를 다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③ 심사자료중에서 관련협회에서 신고된 내용을 일정금액미만 단위로 절사한 경우로서 절사한 금액이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에 의하여 절사한 금액을 인정하여 평가한다.

④ 적격심사항목중 이행실적 등 기술적인 심사분야는 발주부서에서 평가하고,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은 계약담당부서에서 평가한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10. 01. 01부터 시행한다.

2. 지역업체의 주된 영업소(업) 및 대표자의 소재 및 거주기간 심사시 배점한도 적용기간을 2012. 01. 01부터 5년 이상으로 한다.

3. 2012. 01. 01부터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적용한다.

단, 발전소주변지역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단순 노무제공 용역 및 고시금액 미만 기술용역은 적용을 유예한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10.11.22이후 입찰 공고분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11.06.07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11.09.16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12.01.01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12.02.15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13.11.04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13.12.31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14.05.07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15.01.05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16.12.31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17.01.01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시행한다.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30억 이상	10-30억 미만	10억 미만
I. 당해용역 이행능력	1.수행실적	동등 실적	가. 원전연료 복합운송주선실적(입찰참가자) 나. 원전연료 복합운송주선실적(해외 Partner)	25	25	20
		유사 실적	다. 위험물 등급별 복합운송주선유사실적 라. 위험물 Class 7 유형별 복합운송주선유사실적 마. 정비자재 운송실적			
	2.기술능력	가. 장비 보유 현황 나. 영업년수 및 업무경험 다. 전문가(인력) 보유정도 라. 교육훈련 이수 수준	35	25	20	
II.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10	10	10
소 계				70	60	50
III.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40	50
합 계				100	100	100
IV. 신인도		가. 우수물류업체 인증 획득 나. 발주기관 서면경고 다. 최근 2년간 불공정거래(계약불이행) 상습 위반자 라. 용역결과 보고서 평가 마. 윤리행동강령준수 의무 위반		±5.0	±5.0	±5.0
V. 수행능력 결격사유		가. 이행위험		△20	△20	△20

1.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9 및 9-1] 및 [별지 ㉞]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2. 수행실적의 최대 배점한도는 동등실적 내 가 항목, 나 항목별 30억 이상은 25점, 10~30억 미만은 25점, 10억 미만은 20점으로 산정한다. 단, 동등실적의 가, 나 항목이 만점이 안 될 경우, 유사실적 항목 중 가장 높게 획득한 항목을 가점으로 동등실적의 점수와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9-1] 및 [별지 ㉞]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신인도평가는 [별지 ㉞]에 의하여 평가한다.

I. 당해용역 이행능력

1. 수행실적 및 기술능력

심사분야	심사항목		평가기준	평점			
				1	2	3	
1. 이행능력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원전연료와 동등 운송 실적 [물량기준]	가. 입찰참가자 실적(물량) (실적/당해 용역 예상물량)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40%이상 ~ 70%미만 D. 10%이상 ~ 40%미만	25.0 23.0 21.0 19.0	25.0 23.0 21.0 19.0	20.0 18.0 16.0 14.0	
		나. 해외파트너 실적(물량) (실적/당해 용역 예상물량)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40%이상 ~ 70%미만 D. 10%이상 ~ 40%미만	25.0 23.0 21.0 19.0	25.0 23.0 21.0 19.0	20.0 18.0 16.0 14.0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유사 운송 실적 [금액기준]	다. 위험물 등급별 운송 실적(금액) (실적/당해 용역 발주금액)	Class 7의 원전연료를 제외한 1부터 9까지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수행한 총 사업비 실적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4.0 3.0 2.0 1.0	4.0 3.0 2.0 1.0	4.0 3.0 2.0 1.0
		라. 위험물 Class 7 유형별 운송 실적(금액) (실적/당해 용역 발주금액)	Class 7 유형별 최근 5년간 수행한 총 사업비 실적(가항목의 인정 실적 제외)	Class 7 [White I] Class 7 [Yellow II] Class 7 [Yellow III]	5.0 6.0 7.0	5.0 6.0 7.0	5.0 6.0 7.0
		마. 정비자재 운송실적 (실적/당해 용역 발주금액)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40%이상 ~ 70%미만 D. 10%이상 ~ 40%미만	4.0 3.0 2.0 1.0	4.0 3.0 2.0 1.0	4.0 3.0 2.0 1.0	
		가. 장비보유 현황 - 입찰참가자/해외파트너 소유의 원전연료 운송용 특수 컨테이너 소유, 임대, 제작 수량	A. 20대 이상 B. 10대 이상 ~ 20대 미만 C. 1대 이상 ~ 10대 미만	10.0 8.0 6.0	6.0 4.0 2.0	5.5 3.5 1.5	
2. 기술능력	나. 영업년수 및 업무경험	A. 운송주선 영업년수 10년 이상인 업체 B. 운송주선 영업년수 10년 미만 5년 이상 업체 C. 운송주선 영업년수 5년 미만 업체	10.0 8.0 6.0	6.0 4.0 2.0	5.5 3.5 1.5		
	다. 전문 인력 보유 현황 (최근 5년간 원전연료 운송주선 실적 보유자)	원전연료 관련 기술인력보유	A. 3명 이상 B. 2명 이상 C. 1명 이하	4.0 3.0 2.0	3.5 2.5 1.5	3.0 2.0 1.0	
		운송주선 관련 전문인력보유	A. 3명 이상 B. 2명 이상 C. 1명 이하	4.0 3.0 2.0	3.5 2.5 1.5	3.0 2.0 1.0	
	라. 교육훈련 이수 수준	A. 교육훈련 이수율 100% 이상 B. 교육훈련 이수율 100% 미만 50% 이상 C. 교육훈련 이수율 50% 미만	7.0 6.5 6.0	6.0 5.5 5.0	5.0 4.5 4.0		

주) 1 : 30억 원 이상, 2 : 10~30억 원, 3 : 10억 원 미만

※ [주]

- ① 수행실적의 인정은 동등 운송 실적과 유사 운송 실적으로 구분하고, 동등 운송 실적은 한수원에서 발주한 사업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과업을 수행하거나 그 이상으로 인정하는 위험물이 포함된 용역 이행 실적을 의미한다. 유사 운송 실적은 계약목적 용역의 일부가 포함되지 아니한 Class 7의 한수원에서 발주한 원전연

료 물질을 제외한 Class 1부터 9까지의 최근 5년간 수행한 실적, Class 7의 유형에 해당하는 실적, 원전 정비자재를 포함한 실적을 의미한다.

- ② 수행실적의 동등 실적은 가, 나 목으로 평가하며, 두 항목 중 평가를 높게 받은 배점을 우선시 하되, 동등 실적의 최대 배점한도는 25점으로 하고, 유사 실적의 최대 배점한도는 7점 또는 4점으로 한다. 즉, 동등 실적이 모두 인정될 경우, 25점 만점을 받고 반면, 25점 미만일 경우에는 유사 실적 항목들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항목과 합산하여 최대 25점을 획득할 수 있다.
- ③ 동등 운송 실적의 원전연료는 UF6(6불화우라늄), UO2(산화우라늄)을 의미하고, 동등 운송 실적은 IMDG Code의 규정에 따라 Class7 중 원전연료의 운송실적을 의미한다.
- ④ 유사 운송 실적은 IMDG Code의 규정에 따라 Class1에서부터 Class9까지의 위험물을 운송한 실적 및 정비자재 운송 실적을 의미한다.

1. 이행능력 평가 세부 기준

가. 입찰참가자 실적

- ① 국외운송주선실적(UF6/UO2¹⁾) 및 입찰물량은 빈용기 운송실적을 제외한 원전연료 실적 및 물량을 대상으로 한다.
- ② 국외운송주선실적(UF6/UO2)은 20ft컨테이너 수량 혹은 운임적용톤수(R/T : 중량(W/T)과 부피(CBM)중 큰 것)에 의하고, 필요시 20ft컨테이너 당 25R/T로 환산 적용한다.
- ③ 입찰참가자의 국외운송주선실적(UF6/UO2)은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에서 발행한 국외운송실적 증명서(붙임서식 3)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 이외의 국외운송주선실적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입찰참가자의 상호가 기재된 선사발행 B/L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별지서식 3)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한다.
- ④ 심사항목 등급 외는 “0” 점으로 한다.

나. 해외파트너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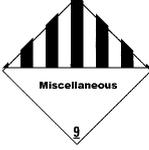
- ① 국외운송주선실적(UF6/UO2) 및 입찰물량은 빈용기 운송실적을 제외한 원전연료 실적 및 물량을 대상으로 한다.
- ② 국외운송주선실적(UF6/UO2)은 20ft컨테이너 수량 혹은 운임적용톤수(R/T : 중량(W/T)과 부피(CBM)중 큰 것)에 의하고, 필요시 20ft컨테이너 당 25R/T로 환산 적용한다.
- ③ 해외 Partner의 운송주선 실적증명서(UF6/UO2)는 원전연료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증명을 요한다.(Partner의 상호가 기재된 선사발행 B/L 및 운송주선 계약서 첨부)
- ④ 심사항목 등급 외는 “0” 점으로 한다.

다. 위험물 등급별 운송 실적

- ① 위험물 등급별 복합운송주선 유사실적 및 입찰물량은 빈용기 운송실적을 제외한 실적 및 물량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위험물 등급별 복합운송주선유사실적 증명서는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에서 발행한 국외운송실적 증명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 이외의 국외운송주선실적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입찰참가자의 상호가 기재된 선사발행 B/L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한다.
- ③ 심사항목 등급 외는 “0” 점으로 한다.
- ⑤ 평가방법 :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총합을 당해 용역 추정금액으로 나눈 값(%)
- ⑥ 유사실적은 Class 7을 제외한 Class 1~6, 8~9까지의 등급을 인정하며, 각 등급 및 Label에 따른 비중은 모두 동일하다.

Class	Label		
1			

1) UF6 : 6불화우라늄 / UO2 : 산화우라늄

	Division 1.1D	Division 1.3C	Division 1.4S
2			
	Division 2.1	Division 2.2	Division 2.3
3			
	Class 3		
4			
	Division 4.1	Division 4.2	Division 4.3
5			
	Division 5.1	Division 5.2	
6			
	Division 6.1	Division 6.2	
8			
	Class 8		
9			
	Class 9		

라. 위험물 Class 7(방사능 물질) 유형별 운송 실적

- ① 위험물 Class7 등급 복합운송주선유사실적 및 입찰물량은 빈용기 운송실적을 제외한 실적 및 물량을 대상으로 한다.

- ② 별표 9의 가 항목에서 인정받은 원전연료 실적은 인정받지 못한다.
- ③ 위험물 Class 7 등급 복합운송주선유사실적 증명서는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에서 발행한 국외운송실적 증명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 이외의 국외운송주선실적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입찰참가자의 상호가 기재된 선사발행 B/L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한다.
- ④ 심사항목 등급 외는 “0” 점으로 한다.
- ⑤ 유사실적은 Class 7의 Label에 따라 정의하며, Class 7 White I은 40%, Class 7 Yellow II은 70%, Class 7 Yellow III는 100%로 인정한다.

Class	Label		
7			
등급구분	Class 7 White I	Class 7 Yellow II	Class 7 Yellow III
인정기준	40%	70%	100%

⑥ 평가방법 :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총합을 당해 용역 추정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한다.

		평가기준	세부평점
Class 7 유형별 최근 5년간 수행한 총 사업비 실적	Class 7 White I	A. 100%이상	5
		B. 70%이상 ~ 100%미만	4
		C. 40%이상 ~ 70%미만	3
	Class 7 Yellow II	A. 100%이상	6
		B. 70%이상 ~ 100%미만	5
		C. 40%이상 ~ 70%미만	4
Class 7 Yellow III	A. 100%이상	7	
	B. 70%이상 ~ 100%미만	6	
	C. 40%이상 ~ 70%미만	5	

마. 정비자재 운송실적(원전연료 복합운송주선 용역 5년 이상 유경험자 3명 이상 보유 업체)

- ① 이행실적 물량 산출시 항공의 경우 운임적용톤수를 기준으로 하되 1,000kg을 1 R/T로 적용한다.
- ② 해당실적은 원전연료 복합운송주선용역 유경험자 3명 이상을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 ③ 정비자재라 함은, 원자력, 수력, 화력 발전소용 발전설비 또는 정비용 기자재를 의미한다.
- ④ 원전연료 복합운송주선용역 유경험자라 함은, 소속 업체에서 수행한 원전연료 복합운송주선용역에 참여한 인력을 의미하며, 해당 참여 실적을 증명할 수 있도록 당시 업체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미제출시 실적인정 불가)
- ⑤ 운송실적은, 적격심사대상자와 화주간 직접 계약된 장기운송계약에 의해 실제로 이행된 실적만 인정 가능하며,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송실적을 제외한 모든 실적은 실적증명서 제출 시, 실제 운송물량을 확인 할 수 있는 B/L, 운송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미제출시 실적인정 불가)

⑥ 평가방법 :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총합을 당해 용역 추정금액으로 나눈 값(%)

2. 기술능력 평가 세부 기준

가. 장비보유 현황

- ① 컨테이너는 UF6용 UX-30 실린더를 운송하기 위해 제작된 20ft flat rack을 의미한다.
- ② 컨테이너를 소유하지 않은 자에 한하여 컨테이너를 임대 또는 제작할 수 있다.
- ③ 컨테이너를 소유한 자는 컨테이너 매매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여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컨테이너 번호가 명시된 컨테이너 사진 및 일상검사서(inspection certificate)를 컨테이너 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컨테이너 보유 상황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실사점검 또는 컨테이너 보유현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컨테이너를 임대 또는 제작할 경우, 컨테이너 20개 보유수량을 기준으로, 계약이행 여부를 보장하기 위하여 한수원과 연계된 에스프로 등의 금융시스템을 활용하여 컨테이너 총 제작비용의 10%를 입찰 이전에 예치시킨 후,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²⁾
- ⑤ 한수원의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컨테이너 제작 관련 이행 준수' 사항에 대한 내용을 필히 숙지하고, 관련된 입찰이행보증과 계약이행보증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의 입찰보증보험, 계약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되, 이행보증보험의 세부 내용은 원전연료 납품을 위한 주요 물품인 '컨테이너 제작 및 임대'에 관한 확약조건의 내용으로 작성 및 발급받아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점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⑥ 항목 관련서류 미제출시 '0' 점으로 한다.

나. 영업년수 및 업무경험

- ① 영업년수는 법인등기부등록을 기준으로 한다.

다. 전문 인력 보유 현황

- ① 해당용역에 참여한 업체 보유 인력 수(명)를 기준으로 한다.
- ② 최근 5년간 원전연료 운송주선 실적 및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전문인력 및 기술인력으로 구분한다.
- ③ 기술인력이란 원자력 또는 위험물에 관한 국가에서 지정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위험물 관련 각종 자격증(위험물취급자격, 위험물 운송자격, 위험물안전관리자격, 위험물산업기사)과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관계면허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명시하고 있는 원자로조종사, 방사성동위원소 일반감독 및 특수, 핵연료물질 취급자 및 감독자 등에 관한 공인된 자격을 취득 또는 보유한 자를 의미한다.³⁾
- ④ 전문인력이란 복합운송주선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각종 제반사항 및 서류(수출입 신고필증, 해상수입 EDI 시스템, Letter of Guarantee, Devery Order, 통관서류, B/L, 선사 합의서), 관련 법·규정 및 제도(IATA DRG, IMDG Code, ADR Dangerous Goods Safety

2) 에스프로는 거래 양자간에 이를 중개하는 제3자가 개입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성을 높여주는 결제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결제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입찰자가 발주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제작한다거나 전달하는 등을 확인한 다음 대금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작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3) 원자력관계면허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https://license.kins.re.kr/lice/LiceAction?act=INDEX>) 참조

Advisor, 위험물 UN 분류 규정), 위험물 관련 이해 정도(MSDS 위험물 및 화학물질, UN 위험물 번호, 운송명칭, 위험성 분류 또는 구분), 위험물 취급 관련 업무(국제 규정에 따른 제품 및 포장 방법, 고 위험도 위험물의 운송 및 보안계획 수립,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따른 유해위험성 및 위해도 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역량, 포장등급 지정, 포장 검사 및 작업, 컨테이너 수납 및 적재 적합성 점검, 화주 신고서, 컨테이너 수납 작업 확인서, 규정 준수 점검목록 발생 및 선박회사 접수)등의 다수 경험 및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를 의미하며, 국제물류주선업의 허가를 득한 업체에 소속된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를 의미한다.

- ⑤ 해당 기술 및 전문인력은 위 사항에 포함 또는 **경력증명서** 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기관 및 협회**에서 발급받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미제출시 실적인정 불가).
- ⑥ 기술인력 및 전문인력은 최대 1명만 중복인정 받을 수 있다.

라. 교육훈련 이수 수준

- ① 교육훈련이란 참여기술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8조제2항 제2호에 의해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원자력 또는 위험물 관련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해당 업체의 안전관리규정, 장비 및 방사선원 취급에 관한 정기교육⁴⁾을 이수 또는 수료한 자를 말하며, 입찰당시 유효한 인증자격 및 기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②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해당연도의 교육 이수증 또는 수료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 ③ 교육훈련 이행실태의 평가대상은 다 항목의 평가대상 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II. 경영상태 평가 세부 기준 : 별지 ㉔ 참조

III. 입찰가격

구 분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III.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40 50

규모구분	비중 (비가격 : 가격)		적격통과점수	낙찰하한률
30억 원 이상	70	30	85점	80.5%
30억 원 미만 ~ 10억 원 이상	60	40	90점	83.0%
10억 원 미만	50	40	95점	85.5%

1. 입찰가격 평점산식

$$\circ \text{ 평점(점)} = \text{입찰가격배점한도} - 2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4) 관련 교육은 2년 간 유지 후, 3년 되는 해마다 재교육 실시(자격 유지)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IV. 신인도 평가기준 : 별지 ㉔ 참조

V. 수행능력 결격 사유 : 별지 ㉕ 참조

이행실적 평가 공통사항

① 이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목에 의하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9]에 따른다.

- ㉓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의 기준, 금액 또는 면적 또는 규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 ㉔ 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을 이행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규모(면적또는 수량)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㉕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및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㉖ 이행실적의 평가는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서식3]에 의하여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용역이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용역이행실적으로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신용평가등급 평가 공통사항

- ①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하여 평가하되 평가방법은 제⑤항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단, 경영상태 평가 관련 적격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할 때에 ‘재무비율분석에 의한 평가방법’ 또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을 적격심사신청서[별지서식1]에 명시하고(정부 고시금액 미만 기술용역과 발전소 주변지역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단순노무제공 용역(청소용역과 사옥·사택경상유지보수용역)의 경우, 단,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기술용역의 경우는 관련 고시기준에 따른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명시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평가방법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적격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선택한 방법을 적용한다.(발전소 주변지역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단순노무제공 용역(청소용역과 사옥·사택경상유지보수용역)을 제외한 일반용역의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 ㉡ 업종평균을 적용을 위한 평가대상업종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에서 분류한 업종의 「중분류(종합)」 또는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
- ㉢ 평가대상업종에 대한 업종평균율은 상기 ㉠호 자료상에 나타난 업종평균율을 우선 적용하며 업종 평균율이 없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상의 자료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적용한다.
- ㉣ 적격심사 대상자가 단일기업 내에 여러 종류의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일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② 결산서평가는 최근년도 결산서로 하며, 수시결산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새로이 설립된 업체나 합병으로 신설된 업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이 설립된 업체는 정기결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결산서를,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이하 “외감법” 이라 한다)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 ㉡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 또는 합병으로 신설된 업체는 정기결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결산서를,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 ㉢ 당해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합병된 업체는 제㉠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 ③ 적격심사대상자가 제2항에 의해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외감법” 제2조에 의한 외감법 적용대상업체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외감법 비적용대상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보고서(별지 서식4)를 첨부하여야 하며, 국내 회계기준과 상이한 국외소재 업체의 경우는 심사대상자가 심사항목에 대한 해당국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별지서식4)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외감법 적용 대상업체의 경우는 감사보고서(회계년도말 결산서에 첨부하는 감사보고서 등)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 인 경우에는 5/100를, “부적정의견” 인 경우에는 10/100을, “의견거절” 인 경우에는 20/100을 경영상태 평가 취득점수에서 각각 감점 처리하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⑤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 ㉓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고,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㉔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이상	A2+이상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A0	A20	A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9.5
A-	A2-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0
BBB+	A3+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5
BBB0	A30	BBB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8.0
BBB-	A3-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7.5
BB+, BB0	B+	BB+, BB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7.0
BB-	B0	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6.5
B+, B0, B-	B-	B+, B0, 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6.0
CCC+ 이하	C 이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5.5

신인도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가기준	배점	평점(점)
가. 우수물류업체 인증 획득*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획득 여부	+1.0	±5.0
	우수 국제물류주선업(국토교통부) 인증 획득 여부	+1.0	
다. 발주기관 서면경고**	구두주의 및 서면경고 1~2회	-1.0	
	구두주의 및 서면경고 3~5회	-1.5	
	구두주의 및 서면경고 5회 이상	-2.0	
라. 불공정거래 상습 위반자** (계약불이행 포함)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0.5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1.0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5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2.0	
마. 용역결과 평가 보고서 (직전 용역결과 보고서 점수)	A 등급 : 수(매우 우수)	+2.0	
	B 등급 : 우(우수)	+1.0	
	C 등급 : 미(보통)	0	
	D 등급 : 양(미흡)	-1.0	
	E. 등급 : 가(매우 미흡)	-2.0	
바. 윤리행동강령준수 의무 위반	위반 1건(1명 기준)	-0.5	
	위반 2건(2명 기준)	-1.0	

* 국가 공인인증제도 중에서 우수물류주선업체 인증(AEO)는 화주, 선사,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화물운송과 관련된 물류주체 중 각국 세관당국에 의해 성실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지칭하며, 세관이 정한 물류보안 기준을 충족하여 통관절차상 우대를 받는 기업을 의미한다.

** 발주기관에서 구두주의 및 서면경고와 불공정거래 상습 위반자의 벌점이 -2.0 이상인 경우, 약 1년 동안 입찰에 대한 불이익이 주어지며, 향후 용역사업 수행부분에 있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엄격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⁵⁾

주, 신인도 평가시 유의사항

- ① 업종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단, 신인도 항목은 당해사업의 수행능력이 부족할 경우, 가점항목으로 반영한다.
- ② 1개의 업체가 신인도 평가시 동일 심사항목 내에서 감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절대값으로써 가장 큰 평점만 적용한다.

5) 싱가포르 노동부 안전벌점 규정에서 기업이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참조(Ministry of Manpower).

- ③ 심사항목 다항 및 라항의 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당해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처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간 만료일), 지정일 등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심사항목 다항 및 라항을 PQ평가시 또는 적격심사시에 이미 적용하여 평가하였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으며, 평가되지 않은 심사항목은 신인도 평가시 평가한다.
- ④ 기관별 윤리행동강령(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한수원의 2직급 이상 퇴직인력을 고용한 경우와 한수원의 퇴직임원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고용한 경우 1명당 0.5점 감점(-1점 한도). 이 경우 각 직급별 채용 제한에 관한 규정이 각각 신설되어 시행된 날 이후에 퇴직한 직원부터 적용한다. 단,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한수원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⑤ 관련법령에 의하여 적격심사 신청자가 분할, 합병, 사업양수도를 한 경우에 신인도 평가항목은 그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자가 각각 승계한 것으로 본다.
- ※ 합병의 경우 합병후 신설된 업체, 분할의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 사업양수도의 경우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를 말함
- ⑥ 사법기관의 무혐의처분/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소정의 심사위원회를 거쳐 주의통보한 경우에 한한다.
- ⑦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신인도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감점한다.
- ⑧ 모든 심사항목은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⑨ 용역결과 평가 보고서
- ㉠ 입찰참가자 중 ‘용역결과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C등급(0점)으로 한다.
- ㉡ ‘용역결과 보고서 평가점수’는 발주기관 또는 외부평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보고서 평점 내역서’로 확인한다.
- ㉢ 업체는 한수원에서 제시하는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형식에 따라 사업수행에 대한 결과 작성하고 이를 용역이 종료된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한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한수원은 사업을 시행한 업체가 제출한 ‘사업수행 결과보고서’를 평가하기 위해 별도의 성과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결과물을 한층 개선된 용역사업의 품질 및 서비스, 해당 업체의 업무수행 효율성과 책임성 향상, 발주기관의 만족도 향상 등의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평가를 시행한다.
- ㉤ 성과평가심의위원회는 한수원에서 추천 또는 선출한 내·외부 3~5인 이내 등 적정수준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성과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 기관의 부서장 또는 임원급이 되고, 일반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한수원의 기관장 또는 부서장에게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의미한다.
- ㉥ 평가방법 및 절차는 기본적으로 공개심사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수, 우, 미, 양, 가 등급으로 판정하여 업체에게 ‘용역결과 평가 보고서’로 통보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신청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이의 신청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해당 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⁶⁾
- ⑨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신인도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감점한다.
- ⑩ 모든 심사항목은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6)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참조

수행능력 결격사유 평가기준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점(점)
이행위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보증증권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지 못하는 업자	△20

주, 결격사유 평가시 유의사항

- ① 결격사유의 심사기준일은 적격심사 통과자 통보일로 한다.